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8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정청래·김용민·안도걸

김현정 • 이병진 • 김성환

이건태 · 허성무 · 강선우

전현희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셈. 특히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찰의 별건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별건수사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가 없 어 여전히 별건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법적 제재 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별건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건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98조제4항).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의 제목 "(준수사항)"을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 (생 제198조(준수사항 등) ① ~ ③ 략) (현행과 같음)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 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 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후 이를 단 신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 격정지에 처한다.